

황현아 연구위원

요 약

-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 [① 2017다281367 판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 자살면책 적용 기준
 - (판결요지)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제출된 경우에는 약관상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검토의견)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그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심신상실*과 같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로서, 심신상실 상태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이 면제됨
- [② (손)2018다257958 판결]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시 확인의 이익 요건
 - (판결요지) 다수의견은 보험회사도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수의견은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검토의견)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정을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법적·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의 결론이 타당함
 - * 보험계약자가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손)2019다277812 판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판결요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의 필요성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 (검토의견) 보험사기 등에 의해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나 형평성보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도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1. 검토배경

-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제시함¹⁾

〈표 1〉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구분	사건번호	쟁점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 자살면책 적용 기준
2	(손)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판결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시 확인의 이익
3	(손)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4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 면제의 요건
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수리기간 초과 시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간 초과 렌트비 분담
6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와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 요건

주: 순서는 선고일 기준이고, (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의미함



2.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 자살면책 적용 기준(2017다281367)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재해사망보험의 피보험자인 교사 A는 우울증을 앓던 중 자살하였고, A의 상속인(父)인 B는 A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 **(보험계약)** A가 가입한 공무원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음(이하, "자살면책"이라 함)
 - 다만 위 약관 단서 조항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살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이하, "자살면책 제한"이라 함)²⁾

1) 검토 대상 판결 6건 중 3건(1~3)은 이번 호에서 검토하고, 나머지 3건(4~6)은 다음 호에서 검토함
 2) 참고로,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0. 1. 29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자살면책 제한 사유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었음. 이후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변경되었음. 이때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로서, 심신상실 상태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이 면제됨

- **(사망 경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는 2006년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처음 발생하였고, 2008년부터 매년 가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11년 10월 우울증이 재발한 상태에서 피부·간 질환 등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자살하였음
-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B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이하, “유족보상금 사건”이라 함)에 서 대법원은 A가 우울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³⁾
- **(유족보상금 사건)** 유족보상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A가 공무수행 중 발병한 우울증의 재발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⁴⁾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A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 하지 않았다고 보고 B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음
- **(원심 판단)**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A가 사망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사망 당일 A의 행적, 자 살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A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 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유족보상금 사건과의 관계)** 항소심 법원은 ‘B가 유족보상금 사건에서 승소한 것은 공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인 보험자의 면책 제한사유로서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음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주치의 진단, 우울증과 사망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유족보상금 사건 판결 등을 고려할 때, A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i) A의 주치의인 C가 A의 증상이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인지왜곡 증상을 보였다고 밝힌 점, (ii)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해 국내외의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점, (iii) 유족보상금 사건에 서 A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이 되는 의학적 판단 기준과 유족보상금 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A의 자살이 자살면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됨⁵⁾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10608 판결

4)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검토의견

- 피보험자가 우울증을 앓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자살면책 제한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판단기준)** 어떤 경우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 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왔음⁶⁾

- 기존에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왔음
 - **(인정사례)** 극도의 흥분·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로 뛰어내린 경우⁷⁾ 및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베란다로 뛰어내린 경우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부정사례)** 망인이 사망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⁹⁾

- 반면 대상 판례 및 최근 유사 판례에서는 우울증 심화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유사 판례)** 2020년 선고된 유사 판례¹⁰⁾에서 대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총동적으로 자살을 한 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라고 보았음
 -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사고 면책 제한 사유와 생명·상해보험의 자살면책 제한 사유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양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음

- 자살면책 제한 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5)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법원은 보험 사고 발생일(2011. 10. 12)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음(참고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과거 2년이었으나, 2014년 상법 개정 시 3년으로 연장되었음)

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2005다7055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7)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남편이 아내(망인)에게 함께 죽어버리자고 하며 망인의 목살을 잡고 베란다 난간으로 끌고 가서 망인의 상체를 베란다 밖으로 밀고, 자녀들은 망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잡고 울면서 만류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베란다가 떠나 거실로 향하는 순간 극도의 흥분,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사인임

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10)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302718 판결

- **(자살면책 제한의 취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면책사유에 해당하나¹¹⁾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¹²⁾ 비록 자신의 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을 고의 사고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과 생명을 절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자살면책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위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유족보상금 청구 요건 등과의 구별)** 대상 판례 및 유사 판례는 유족보상금 청구와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청구의 면책 제한 요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자의 판단 기준은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업무(또는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생명·상해보험은 그 목적과 취지가 구별되고¹³⁾ 면책 제한 조항의 문언에도 차이가 있는 바¹⁴⁾, 양자의 판단기준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건 항소심 법원이 유족보상금 청구 사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판단과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존부 판단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한 것은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됨



3.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시 확인의 이익(2018다257958)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추가적인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됨¹⁵⁾

1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12)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본인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와 같이 자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범죄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던 중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와 같이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자살의 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13) 업무(공무)상 재해 보상보험은 업무(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설령 그것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일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업무(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고, 사망이 망인의 인식과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양자는 구별됨

14) 산재보험의 고의사고 면책 제한 사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령 제36조)와 생명보험의 고의사고 면책 제한 사유(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문언에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구분	고의사고/자살 면책 제한 사유
산재보험	(i)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ii)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iii)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생명·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개정 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15)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X는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A업체 대표였음. X는 Y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란'에 '사무직', '취급하는 업무'란에 'A업체 대표'라고 각 기재하였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권리·법률관계를 다투므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원고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쟁점)**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요건 외에 추가적인 요건(소를 제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됨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 다수의견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가 보험계약자 측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고,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반면 반대의견은 보험계약자가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대의견은 그 근거로 보험의 공공성, 보험계약의 특수성, 당사자 간의 형평성, 소 제기 남용 가능성을 제시함¹⁶⁾

다. 검토의견

-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추가적 요건 요구할 법리적·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소송 제기를 금지하거나 어렵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통해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별개로, 보험회사들은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음. 이후 X가 A업체 공장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상속인이 Y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Y는 X가 실제 직업이 ‘도장업’임에도 직업란에 ‘사무직’으로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이 사건의 1심 및 원심은 X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Y보험회사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Y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의 확인의 이익 존부를 판단하였음

- 16) 반대의견의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i) 보험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바, 분쟁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험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고(공공성), (ii)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보험계약의 특수성). (iii) 또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확인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송에 대응해야 할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고(당사자 간의 형평성), (iv)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보험계약과 무관한 경영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제도 남용의 우려도 있음(남용 가능성)

하고, 소송절차나 비용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응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2019다277812)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됨
 -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i) 상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ii)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 **(기존 판례)** 기존 판례는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i)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기지급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와¹⁷⁾, (ii)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¹⁸⁾가 있음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의 필요성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 (i) 보험계약 무효에 기한 보험금 반환청구는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ii)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가입은 통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음
 -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상법 제662조),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1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

1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 위 판결 이후 대법원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¹⁹⁾
 - 위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심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험금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게 되면, 보험금 지급 후 5년이 경과한 후 보험사기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보험금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됨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범죄인 보험사기에 해당함
 - 이 경우 형사판결을 통해 보험사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환수해야 하는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보험금 환수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²⁰⁾
 - 또한, 형사범죄인 보험사기죄에 대해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관련 민사청구권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그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나 형평성보다 불법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일 것임
 - 보험사기 이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²¹⁾에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같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취득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나 형평성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19)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20) 대상 판례 및 각주 19의 사례가 이에 해당함

21) 예)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 동의 요건 흠결